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01월 04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01월 05일

3. 제안이유

○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,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청장의 대상(안 제3조)

○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관장 사항(안 제4조)

○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(안 제5조)

○ 집행위원회 구성 및 관장 사항(안 제6조)

○ 장례비용 지원의 범위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목적

○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충청북도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,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안 제1조(목적)부터 안 제2조(정의)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.

○ 안 제3조(도청장의 대상자)는 도청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음. 다만, 도청장의 대상이 된 경우라도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장을 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둠.

○ 안 제4조(장례위원회)는 도청장 집행을 위한 ‘충청북도 장례위원회’ 설치 근거와 관장 사항, 위원의 자격 등 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,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, 출석회의가 원칙과 예외적인 서면심의를 규정함.

○ 안 제5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는 도청장 결정 시 빈소의 설치·운영,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주관, 장례기간은 5일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 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안 제6조(집행위원회)는 도청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는 근거와 구성 및 관장사항을 규정함.

○ 안 제7조(장례비용)은 충청북도 예산으로 도청장 대상 직원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이 불가한 비용을 규정하였고, 가족장 집행 후 도청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.

○ 안 제8조(애도기간 운영)는 도청장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애도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.

○ 안 제9조(운영세칙)는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례위원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둠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충청북도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,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.

○ 도청장 대상이 되는 자격과 집행에 필요한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, 도청장에 대한 유가족의 선택 유무, 가족장 후 도청장 대상이 된 경우 가족장 소요 비용 지원가능, 도청장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사망 공무원에 대해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며,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입법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상기 적시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. 끝.